

**인천광역시서구**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**제771호    2010. 7. 22.(목)**

차    례

**규   칙**

-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-- 2

**고   시**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-37호 지적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)  
고시 ----- 3

**공   고**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52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-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----- 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 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  
규칙안 입법예고 ----- 14

<b>회 람</b>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**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**

**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**

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0년 7월 22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4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의 “과오납금의 반환”을 “과오납금의 반환(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”를 “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-37호

## 지적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) 고시

인천 서구 석남4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에 설치(재설치)한 지적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)에 대하여 측량·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)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 4점, 지적도근점 28점)을 고시합니다.

2010. 7. 20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■ 개 요

1.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(이하 좌표와 같음)
2. 좌표

일련번호	명 칭	좌 표	
		X좌표(m)	Y좌표(m)
별지참조			

### 3. 소재지와 측량연월일

- 소 재 지 : 인천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원
- 측량연월일 : 2010년 3월 16일(지적삼각보조점 4점 지적도근점 28점)

### 4. 측량성과보관 장소

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

### ■ 열람안내

○ 측량·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문의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 별 지 】

## 지적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, 지적도근점)

일련번호	명 칭	중부좌표		계양좌표		세계측지계		비고
		X	Y	X	Y	X	Y	
인서보136	지적삼각보조점	444970.12	170475.30	-5172.87	-4223.59	545276.102	170545.701	신규
인서보137	지적삼각보조점	444960.72	171399.42	-5179.82	-3299.46	545266.713	171469.812	신규
인서보138	지적삼각보조점	444584.66	171283.16	-5556.18	-3414.72	544890.653	171353.561	신규
인서보139	지적삼각보조점	444625.69	170463.39	-5517.33	-4234.60	544931.676	170533.790	신규
88	지적도근점			-5170.64	-4039.93	545277.842	170729.369	재설치
89	지적도근점			-5204.86	-3575.99	545242.397	171193.217	재설치
90	지적도근점			-5180.78	-3807.80	545267.082	170961.474	재설치
91	지적도근점			-5203.11	-3737.43	545244.570	171031.780	재설치
92	지적도근점			-5174.83	-3681.70	545272.715	171087.586	재설치
100	지적도근점			-5280.63	-3686.26	545166.928	171082.757	재설치
108	지적도근점			-5380.86	-3429.50	545066.007	171339.248	재설치
109	지적도근점			-5546.39	-3436.87	544900.499	171331.443	재설치
110	지적도근점			-5551.37	-3491.31	544895.666	171276.988	재설치
111	지적도근점			-5554.97	-3536.40	544892.185	171231.890	재설치
112	지적도근점			-5549.13	-3592.49	544898.174	171175.811	재설치
113	지적도근점			-5544.94	-3697.98	544902.641	171070.333	재설치
114	지적도근점			-5541.58	-3756.85	544906.153	171011.476	재설치
115	지적도근점			-5533.35	-3931.40	544914.860	170836.949	재설치

일련번호	명 칭	중부좌표		계양좌표		세계측지계		비고
		X	Y	X	Y	X	Y	
116	지적도근점			-5526.82	-4057.68	544921.720	170710.687	재설치
117	지적도근점			-5522.85	-4127.72	544925.871	170640.658	재설치
118	지적도근점			-5452.08	-3694.24	544995.492	171074.318	재설치
252	지적도근점			-5366.24	-3690.80	545081.328	171077.992	재설치
255	지적도근점			-5184.97	-3475.20	545262.027	171294.061	재설치
6725	지적도근점			-5289.20	-3417.46	545157.633	171351.532	신규
6726	지적도근점			-5478.41	-3426.40	544968.444	171342.093	신규
6750	지적도근점			-5209.04	-3482.73	545237.971	171286.468	신규
6751	지적도근점			-5195.18	-3422.84	545251.674	171346.399	신규
6752	지적도근점			-5190.87	-3428.97	545256.009	17134.276	신규
6753	지적도근점			-5194.15	-3364.12	545252.560	171405.116	신규
6754	지적도근점			-5223.35	-3220.16	545222.984	171548.998	신규
6803	지적도근점			-5534.58	-3850.06	544913.411	170918.280	신규
6804	지적도근점			-5176.32	-3914.80	545271.829	170854.486	신규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52호

##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
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「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,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(재결의 신청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,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(열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(재결신청서의 열람 등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 0 1 0 . 7 . 2 0 .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
2. 사업시행자 성 명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3. 사 업 시 행 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
4. 사 업 개 요 : 가좌완충녹지 3단계 9,813m<sup>2</sup>
5. 열 략 기 간 : 2010. 7.20. ~ 2010.8. 3.
6. 열 략 장 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(☎ 032-560-4805)
7. 의견서 제출처 :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,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
8. 대 상 물 건 조 서 : “붙임” 참조 (원본: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비치)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(☎032-560-48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58호

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7월 21 일

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
### 1. 개정취지

- 다양한 외국어활성화 사업의 체제적,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
- 영어마을의 명칭변경 적용
-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
-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의 추진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운영 가능

### 2. 주요내용

- 특화사업의 범위(안 제3조 개정)
  - ▷ 현행 추진 중인 외국어활성화 사업(권역별 영어교육센터, 주말영어 광장, 방학영어 캠프, 영어말하기대회, 비바잉글벨 등) 추진근거 마련.
- 서구영어마을 명칭(안 제3조제2호 개정)
-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 대상의 수혜폭을 현황에 맞게 조정(안 제3조제4호 개정)
- 효율적인 특구운영위원회 회의 추진을 위한 회의개최 횟수 조정(안 제5조제3항 개정)
- 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운영(안 제10조의2 신설)
  - ▷ 현행 추진 중인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특화사업 추진 실현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교육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5912) 및 FAX(560-5919)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<b>자 치 법 규 명</b>	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<b>개 정 이 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양한 외국어활성화 사업의 체제적,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</li> <li>○ 영어마을의 명칭변경 적용</li> <li>○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</li> <li>○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추진근거 마련</li> </ul>
<b>주 요 내 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추진 중인 외국어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및 외국어활성화사업(권역별 영어교육센터, 주말영어광장, 방학영어캠프, 영어말하기대회, 비바잉글벨 등) 포함(안 제3조 개정)</li> <li>○ 영어마을을 외국어교육센터로 명칭변경(안 제3조제2호 개정)</li> <li>○ 저소득자녀 영어교육지원 대상의 확대적용(안 제3조제4호 개정)</li> <li>○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반기별 1회로 변경(안 제5조제3항 개정)</li> <li>○ 특화사업 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행사 및 이벤트 수행(안 제10조의2 신설)</li> </ul>
<b>개 정 안</b>	“별 지 참 조”
<b>신·구조문대비표</b>	“별 지 참 조”
<b>관계법령 발췌</b>	“해 당 없 음”
<b>관련사업 계획</b>	“해 당 없 음”
<b>예산수반 사항</b>	“해 당 없 음”
<b>기타 참고사항</b>	“해 당 없 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우리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우리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각급 학교”를 “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어마을”을 “외국어교육센터”로, “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영어학습”을 “외국 문화의 체험과 외국어학습”으로, “우리구”를 “구”로, “시설물”을 “평생교육시설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”을 “저소득층 및 엘리트 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그 밖에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어활성화 사업(권역별 영어교육센터, 주말영어광장, 방학영어캠프, 영어말하기대회, 비바잉글벨 등)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사업계획서 및 예산서”를 “사업계획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세입·세출 결산서”를 “재정운영내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11인”을 “11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분기별”을 “반기별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정한다”를 “따로 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 운영) ①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이 교육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약(계약)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충실히 이행하며,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 운영 시 구민의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말영어광장, 영어말하기 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
2.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
3.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이용 횟수, 학습 참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운영

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 및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.

④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시기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 중 “9월말까지”를 “11월말까지”로 하고, “사업계획서 및 예산서”를 “사업계획서”로 하며, “세입·세출 결산서”를 “재정운영내역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2조에 따라 <u>우리구</u>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: (생략)</p> <p>1. “외국어교육특구”라 함은 각급 학교 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<u>우리구</u>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회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.</p> <p>2 ~ 3. (생략)</p> <p>제3조(특화사업의 범위) : (생략)</p> <p>1. <u>각급학교</u>에 대한 원어민 교원 또는 강사의 배치사업</p> <p>2. <u>영어마을(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영어학습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립한 시설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<u>차상위계층</u>에 대한 영어교육사업</p> <p>5. 그 밖에 <u>엘리트 영어교육사업</u> 등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<u>사업. 다만,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<u>인천광역시 서구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: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<u>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특화사업의 범위) :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</u>----- -----</p> <p>2. <u>외국어교육센터(외국 문화의 체험과 외국어학습 또는 ----- -----구 평생교육시설물을 -----)</u>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저소득층 및 엘리트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사업</u></p> <p>5. 그 밖에 외국어 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<u>외국어활성화사업.(권역별 영어교육센터, 주말영어광장, 방학영어캠</u></p>

<p><u>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.</u></p> <p>제4조(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0조에 따른 <u>사업계획서 및 예산서</u>의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3. 제10조에 따른 <u>세입·세출결산서</u>의 검사에 관한 사항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인</u>을 포함하여 <u>11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위원회의 회의는 <u>분기별로</u>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u>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8조(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<u>정한다.</u>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「<u>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</u>」 제5조</p>	<p><u>프, 영어말하기대회, 비바잉글벨 등) (단서조항 삭제)</u></p> <p>제4조(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사업계획서</u>-----</p> <p>3. -----<u>재정운영내역서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1명</u>----- -----<u>11명</u>-----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위원회의 회의는 <u>반기별로</u>-----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의 해촉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u>.(단서조항 삭제)</u></p> <p>제8조(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④ -----<u>「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5조제2항 부터</u></p>
--	---

<p>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.  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제4항까지의 규정-----.  제10조의2(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 운영)  ①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이 교육사업  입을 감안하여 협약(계약)내용을 신의  와 성실로서 충실히 이행하며, 양질  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  여야 한다.  ②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 운영 시  구민의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 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  각 호의 행사를 수행할 수 있다.  1.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말영어광장,  영어말하기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 2.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 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 3.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  그램 이용 횟수, 학습 참여도 등에 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운영  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 참여자 및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을  할 수 있다.  ④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행사  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시기 및 행사 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서  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
<p>제1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수탁사  업자는 매 사업연도 <u>9월말까지</u> 수탁사업  에 대한 <u>사업계획서 및 예산서</u>를 작  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 얻어야 하며, 매 사업연도 종료 후  <u>세입·세출결산서</u>를 작성하여 구청장 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 받은 후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관련 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-----  ----- <u>11월말까지</u> -----  ----- <u>사업계획서를</u> -----  -----  -----  <u>재정운영내역서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59호

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 
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「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7월 20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
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2. 폐지이유

- 2009.11.28.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,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사항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확인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- 「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」을 폐지함.

4. 의견제출

이 폐지조례안과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**2010년 08월 10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 참조: 지역경제과장, 전화: 560-4453 , FAX: 560-4439 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
2.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